

##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년월일 | 2016. 5. .   |
| 발 의 자 | 윤종호 의원 외 10명 |

#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종호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16. 5. .

발 의 자 : 윤종호 · 김상조 · 김인배 · 김재상  
김정곤 · 박교상 · 안장환 · 윤영철  
임춘구 · 정근수 · 한성희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구미시 구포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향지역 주민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8조제1항)

### 3. 조 례 안 : 붙임

#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라. 기     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”를 “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위탁 운영을 받은 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 구포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</u> | 제8조(위탁운영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매<br><u>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</u><br><u>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</u><br><u>으며 그 외 적정하게 운영할 수</u><br><u>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 운</u><br><u>영할 수 있다.</u> |
| ② · ③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#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③ 생략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
⑤ ~ ⑥ 생략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⑧ 생략

#### 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.

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2.3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, 지원기준·방법, 공개내용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